

사업주와 근로자의
튼튼한 파트너

경영이 어려운 회사의 파트너

고용유지지원금



고용노동부

Contents



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

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	6
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Q&A	8
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요건 완화 적용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	13
「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」 시행 관련 Q&A	14
관광·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	18
관광·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Q&A	21



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서

고용유지지원금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?	24
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?	25
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	26
전국고용센터 문의처	41

경영이 어려운 회사의 든든한 파트너

고용유지지원금



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



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·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도록 함

-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란?

기준달의 매출액·생산량이 (1)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·생산량 또는 (2)기준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·생산량 또는 (3)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·생산량 대비 15%이상 감소한 경우 등

- 매출액 15%감소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도록 지원 요건 완화

인정예시

예약취소증, 휴업권고서, 원자재수급불가에 대한 증명, 확진자의 방문 등

기간

'20.1.29. ~ 「국가 감염병 위기경보」 해제시까지

지원 조건 및 수준

기존 고용유지지원금과 동일

구분	지원 조건	지원 수준
휴업	총근로시간의 20%를 초과하여 단축근무	사업주가 지급한 휴업·휴직수당의 2/3 (대규모기업은 1/2~2/3) *1일한도는 6.6만원(연 최대 180일까지)
휴직	1개월이상의 휴직	※'20.2.1.~7.31.의 기간에는 우대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·휴직수당의 3/4 (대규모기업은 2/3)



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



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



사업개요

매출액·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(휴업·휴직)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

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

←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(기준달)의

-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% 이상 증가한 사업주
- 매출액·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·생산량,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·생산량,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·생산량대비 15% 이상 감소
-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,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% 이상 감소
-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
-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·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
-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,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
-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%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%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
- 당해 업종·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

지원 조건 및 지원 수준

사업명	지원 조건	지원 수준
휴업	근로시간조정, 교대제 개편, 휴업등으로 역(曆)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/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, 휴업·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	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·휴직수당의 2/3(대규모기업 1/2~2/3) 지원 * 1일 6.6만원 한도(연 180일까지)
휴직	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	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/3(대규모기업 1/2~2/3)을 지원 * 1일 6.6만원 한도(연 180일까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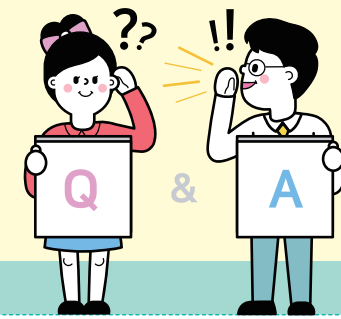
* 시행규칙 제25조(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) ①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전부터 4개월까지의 기간(이하 이조에서 '기준기간'이라고 한다)동안 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으로 한다.

지원(신청)절차





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Q&A



Q 1.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- 먼저,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(휴업·휴직)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“고용유지조치계획서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신청은 “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”에서 가능하며,



- 궁금한 사항은 (국번없이)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 과(팀)로 연락주시면 됩니다.(전국고용센터 문의처 참조 P.41)
-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·휴직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<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>



Q 2.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?

-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, 실제 지급한 인건비 (휴업 또는 휴직수당)의 1/2 ~ 2/3*을 지원해 드립니다.

* 지원 수준: ▲우선지원대상기업: 휴업·휴직수당의 2/3
▲대규모기업: 휴업·휴직수당의 1/2 또는 2/3

Q 3.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?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?

- 아닙니다.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% 초과*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,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

*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: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(기준달)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 평균근로시간

Q 4.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?

-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-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.

Q 5. “고용유지조치계획서”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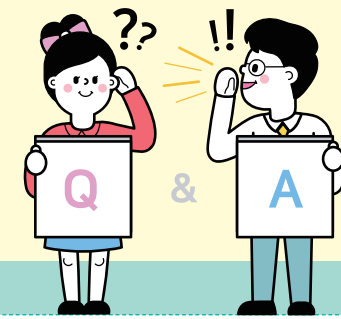
- 휴업·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 “고용유지조치계획서”를 제출하시고 실제로 휴업·휴직을 실시한 경우,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휴업은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(예시: 1.1.~1.31.)로 제출해야 하며,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.

휴업예시 1.19.~2.18. 신청시 1.19.~1.31., 2.1.~2.18.로 신청해야함

휴직예시 1.19.~2.18.(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)



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Q&A



Q 6.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, 계획대로 휴업·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변경된 고용유지조치(휴업·휴직)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“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변경 신고서 제출 방법은 “고용유지조치계획서”와 동일합니다.

Q 7. 총 근로시간을 정하는 6개월 전과 현재 피보험자 수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?

- 6개월 전에 비해 현재 피보험자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현재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6개월 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.

예시 6개월 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, 피보험자 수가 10명이었으나, 현재 피보험자 수가 12명으로 증가한 경우

→ 기준근로시간 = 현재 피보험자 수(12명) × 40시간 = 480시간

Q 8. 총 근로시간에 연장·휴일근로 시간 등도 포함되나요?

- 근로시간은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 다른 ‘소정근로’, ‘연장근로’, ‘휴일근로’이거나,
- 상당 기간 계속적·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‘연장근로’, ‘휴일근로’를 의미합니다.

* 일시적·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는 해당되지 않음

Q 9. 지사(또는 공장별)로 신청할 수 있나요?

- 원칙적으로는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. 다만, 각 사업장별로 ①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, ② 인사·노무 ③ 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어,
-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.

Q 10.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?

- 고용촉진장려금, 고용창출장려금,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,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.

Q 11.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?

아래 예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- ①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, 사업주 권유, 희망,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
- ②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
- ③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, 매출액·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
- ④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
- ⑤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



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Q&A

Q 12.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없나요?

-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·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실 경우, 지급 제한·추가 징수(최대 5배)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부정수급 예시

- 매출액이나 생산량 변동 등 고용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위조·변조하여 지원금을 신청
- 감원방지기간(고용유지조치기간과 그 이후 1개월 이내)에 고용조정이 있었는데도 상실사유를 거짓 신고하거나 또는 지연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
-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휴업 등의 기간에 출근하였으나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·변조하여 지원금을 신청
 - 휴직 참여자가 휴직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신청
- 실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,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임금 또는 수당을 계획서에 따라 모두 지급한 것으로 거짓 신고

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요건 완화 적용



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

- ▶ **사업개요**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*가 휴업·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·휴직수당의 일부 지원
 - * 재고량 50% 증가, 매출액·생산량 15%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
- ▶ **특별지원** 매출액 15%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'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'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
 - *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: 당해업종,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

지원대상

-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* 중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
 - *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, 숙박업, 보건업(병·의원 등) 등
 -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

추진기간

- '20.1.29. ~ 「국가 감염병 위기경보」 해제 시까지

지원 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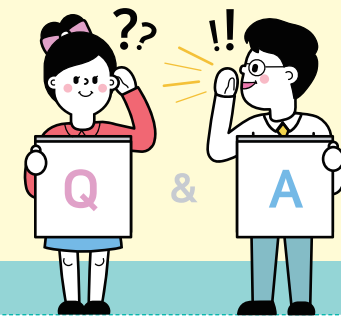
- 전체 근로시간의 20%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

지원 수준

-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·휴직수당의 2/3~1/2(1일 상한액 6.6만원, 연 180일 이내)
 - *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▲우선지원대상기업 2/3 ▲그 외 1/2



「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」 시행 관련 Q&A



❖ '20.3.1.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일시적(6개월)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「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」 시행

- ①20.2.1.~7.31.(6개월) 동안 ②고용유지조치(휴업 또는 휴직)를 하고 휴업·휴직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 수준 상향*

* 지원 수준: ▲ 우선지원대상기업: (현재) 2/3 → (변경) 3/4
▲ 대규모기업: (현재) 1/2 → (변경) 2/3

Q 1.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높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?

-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고용유지조치(휴업·휴직)를 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.
-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
-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.

Q 2. 이번 고시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?

-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일시적(6개월)으로 상향됩니다.
-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·휴직수당의 최대 3/4까지 지원합니다. 이 경우, 월급이 20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12만원 줄어들게 됩니다.
- * 지원 수준: ▲ 우선지원대상기업: (현재) 2/3 → (변경) 3/4
▲ 대규모기업: (현재) 1/2 → (변경) 2/3

〈 지원 수준 상향 시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〉

사 례	구 분	현 행	지원 수준 상향 시(2/3→3/4)
월급 200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	휴업·휴직수당(A)	140만원	140만원
	고용유지지원금(B)	93만원	105만원 (+12만원)
1개월 휴업·휴직시	기업부담분(A-B)	47만원	35만원 (-12만원)

Q 3.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은 코로나 피해기업만 받을 수 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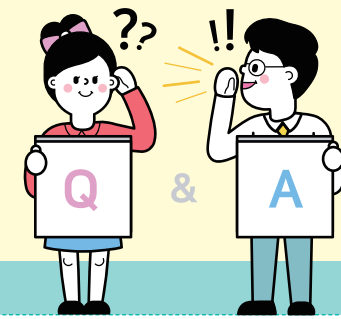
- 아닙니다. ①'20.2.1.~7.31.(6개월) 동안 ②고용유지조치(휴업 또는 휴직)를 하고 휴업·휴직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3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Q 4.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주(예: '20.1.1. 고용유지조치실시)에게도 상향된 지원 금액이 지원되는 것인가요?

-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'20.2.1. 이전 또는 '20.7.31.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다만, '20.2.1.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등 1달이라도 지원 기간(6개월)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

「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」 시행 관련 Q&A



사례 1

- 고용유지조치를 '19. 12. 1.~'20. 3. 31.까지 실시한 경우
 - '19. 12. 1.~'20. 1. 31.(2개월) : 2/3 지원
 - '20. 2. 1.~'20. 3. 31.(2개월) : 3/4 지원

사례 2

- 고용유지조치를 '20. 6. 1.~'20. 9. 30.까지 실시한 경우
 - '20. 6. 1.~'20. 7. 31.(2개월) : 3/4 지원
 - '20. 8. 1.~'20. 9. 30.(2개월) : 2/3 지원

〈 지원 수준 상향 시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〉

* (가정) 월급 200만원, 휴업·휴직수당 140만원인 근로자 : 지원금 상향 지원

구 분	고용유지조치기간 / 지원 금액			
	'19. 12월	'20. 1월	'20. 2월	'20. 3월
사례 1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'19.12.1.~'20.3.31.	93만원	93만원	105만원	105만원

구 분	고용유지조치기간 / 지원 금액			
	'20. 6월	'20. 7월	'20. 8월	'20. 9월
사례 2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'20.6.1.~'20.9.31.	105만원	105만원	93만원	93만원

Q 5.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?

- 전체 지원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. 이번 고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이 상향되는 기간을 정한 것 뿐이며,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연 180일로 동일합니다.

Q 6. 1일 지원금액 상한액(66,000원)도 높아지는 건가요?

- 1일 근로자 1명에 대한 평균 지원금액(42,469원)* 상한액 지급비율(전체의 1.3%)을 감안하여, 1일 최대 지원금액(66,000원)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.

* '19년 유급휴직 사업장에 지급된 1일 평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

〈 지원 수준 상향 시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: 월 30일 기준 〉

사 례	구 분	현 행	지원 수준 상향 시 (2/3→3/4)
월급 424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월급	휴업·휴직수당(A)	297만원	297만원
	고용유지지원금(B)	198만원	198만원 (동일)
	기업부담분(A-B)	99만원	99만원 (동일)



관광·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



▶ **지정 업종 범위**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원칙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되, 개별법에서 정한 등록·신고·면허를 받은 업체는 추가로 인정
 *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코드를 말하며, N752, R901는 소분류, 나머지 코드는 세세분류에 따름

업종	분류 기준	
여행업	업종코드	• N752(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)
	개별법	•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1호의여행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
관광숙박업	업종코드	• 55101(호텔업) • 55103(휴양콘도 운영업)
	개별법	•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- 호텔업(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업, 호스텔업, 소형호텔업, 의료관광호텔업), 휴양 콘도미니엄업
관광운송업	업종코드	• 49232(전세버스 운송업) • 50111(외항 여객 운송업) • 50121(내항 여객 운송업) • 50201(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) • 50202(항만 내 여객 운송업) • 51100(항공 여객 운송업)

업종	분류 기준	
관광운송업	개별법	•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시·도시장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
		• 「해운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(같은 법 제3조제1~6호)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
공연업	업종코드	• R901(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)
	개별법	• 「공연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



관광·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



관광·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관련 Q&A

특별지원 내용

-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인정요건 완화

구분	지원 요건
유급 휴업· 휴직 고용유지지원금	지정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봄
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	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유지조치(휴업)를 1개월 이상 실시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*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의3제2항

* 무급휴업· 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함

-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우대

사업명	일반업종 지원 내용	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
휴업 (근로시간조정, 교대제 개편, 휴업 등으로 총 근로시간의 20% 초과 단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· 휴직수당의 2/3 (대규모기업 1/2~2/3)지원 * 1일 66,000원 한도(연 180일까지) ** '20.2.1.~'20.7.31.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2/3~3/4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· 휴직수당의 9/10(대규모기업 2/3~3/4)지원 * 1일 7만원 한도 (연 180일까지, 단 대규모기업은 1일 6.6만원 한도)
휴직 (1개월 이상 휴직 부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/3 (대규모기업 1/2~2/3)지원 * 1일 66,000원 한도(연 180일까지) ** '20.2.1.~'20.7.31.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2/3~3/4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9/10 (대규모기업 2/3~3/4)지원 * 1일 7만원 한도(연 180일까지, 단 대규모기업은 1일 6.6만원 한도)

경과조치 등

-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가 '20년 3월 16일부터 '20년 9월 15일까지인 기간에 한해 지원

-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 적용*

* 고용보험법 제20조,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~21조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~제34조, 무급휴업·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-62호, 2019.12.3.) 등 →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현행 법령 조회 가능

Q 1.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?

- 지원 수준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· 휴직수당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/10, 대규모기업은 2/3~3/4로 상향됩니다.

Q 2. 언제부터 상향지원이 되는 건가요?

- '20.3.16.~'20.9.15.(6개월)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(휴업· 휴직)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.

* 예시 휴업기간이 3.2.~3.31.인 경우 3.2.~3.15.까지 기존 지원 수준인 3/4, 3.16.~3.31.은 상향된 9/10지원

Q 3. 1일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도 변경되는 건가요?

- 1일 지원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으로 상향되며, 대규모기업은 6.6만원으로 동일합니다.
- 지원기간은 연 180일로 변경사항 없습니다.

Q 4. 무급휴직근로자지원금의 변경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

- 무급휴직 최소 실시기간이 30일 이상으로 단축되며,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을 1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.

* 기존 무급휴직 최소한 90일 이상 실시,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 이상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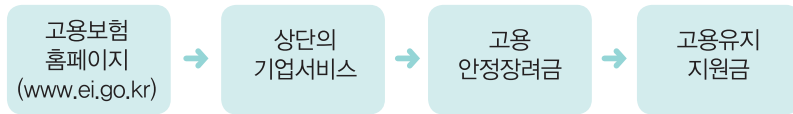


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서

1. 고용유지지원금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?

① 인터넷신청을 원하시나요?

고용보험홈페이지(www.ei.go.kr)를 방문하여 신청해 주세요.



② 방문신청을 원하시나요?

사업체 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(팀)를 방문하여 서류 작성 및 신청해 주세요.(전국고용센터 문의처 참조 P.41)

2.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?

■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

1.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작성하셨나요?

휴업·휴직여부에 따라 고용유지(휴업·휴직)조치계획신고서를 작성해 주세요.

2. 근로자와 휴업·휴직에 대한 협의를 하셨나요?

근로자와 휴업·휴직기간 및 휴업·휴직수당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 증명서류(별도 양식없음)를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시 함께 제출해 주세요.

* 예시 노사협의회 회의록, 노사협약서, 근로자 대표 선임서 및 근로자 대표 동의서 등

3. 매출액, 생산량 등을 증명할 서류가 있으신가요?

매출액 장부, 재고대장, 손익계산서, 세금계산서 등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.

4. 기존 근로시간을 증명할 서류가 있으신가요?

근로시간 조정 등 휴업을 할 경우 근로계약서,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 기존의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.

5.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셨나요?

예약취소증, 휴업권고서, 원자재수급관련 서류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.

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제출

1.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셨나요?

휴업·휴직여부에 따라 고용유지(휴업·휴직)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.

2. 휴업의 경우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?

출·퇴근카드, 출·퇴근 기록부 등 출·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.

3. 휴직의 경우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?

휴직동의서 등 근로자가 휴직을 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.

4. 휴업·휴직수당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?

월별 임금 대장 또는 휴업·휴직수당 지급 대장 등 수당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.

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



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



1. 로그인 하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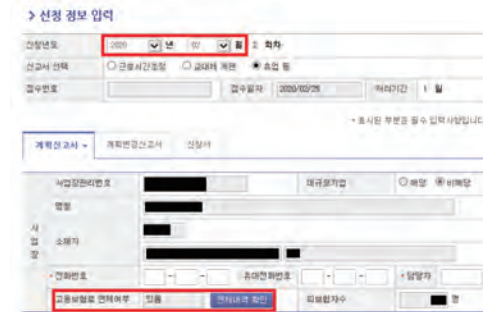
• 기업회원을 클릭하여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누르거나 공인인증서 버튼을 눌러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.

2. 고용유지지원금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기



-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- 기업서비스 - 고용안정장려금 - 고용유지지원금 - 고용유지(유급휴업)지원금 혹은 고용유지(유급휴직)지원금

3. 고용유지(휴업)조치 계획서 작성하기 - 1



- 계획신고서 랭을 선택하면 계획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.
- 로그인 ID가 사업장관리번호 부분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.
- 신고하고자 하는 신청년월을 선택합니다.
- 별표로 표시되어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 값이니 꼭 입력해주시고, 비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으로 입력이 불가합니다.
-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보험료 연체여부를 확인합니다.



3. 고용유지(휴업)조치 계획서 작성하기 - 2

-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.
- 고용유지조치 예정 일자에 해당 일의 휴업예정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휴업일수/시간이 계산됩니다.
- 피보험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피보험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.
- 전산대체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. (*전산대체신고 방법 안내 슬라이드 참고)
- 기동록자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했던 기동록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.

3. 고용유지(휴업)조치 계획서 작성하기 - 4

-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업로드 합니다.
- 업로드 한도 용량이 작기 때문에 파일용량을 낮추어 업로드 하시길 바랍니다.
- 작성된 신고서는 먼저 저장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저장 해주셔야 합니다.
- 이후 수정사항이 있다면 데이터 수정 후 수정버튼을 눌러주셔야 데이터가 정상 수정됩니다.
-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이 완료 되어야 신고서 접수가 완료됩니다.(신고서 접수 이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능합니다.)

3. 고용유지(휴업)조치 계획서 작성하기 - 3

- ①란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각각 월의 소정근로시간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)과 초과근로시간의 합계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.
- ②란은 (월)중 근로시간 조정, 교대제 개편,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 기간을 적습니다.
- ③란은 (월)의 전체 피보험자 중 근로시간 조정, 교대제 개편,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. 이 경우 일용근로자,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피보험자는 제외합니다.
- ④란은 ①의 기준기간 총근로시간을 적습니다.
- ⑤란은 "③의 전체피보험자수 × 조업(근무)일수 × 1일 근로시간"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(1개월간 조업이 없는 경우 "0")
- ⑥란은 ⑥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 등 금품의 지급기준을 적습니다.
- 고용유지조치 사유를 선택한 후, 상세사유를 적습니다.

3. 고용유지(휴업)조치 계획 변경 신고서 작성하기 - 5

- 고용센터를 통해 처리된 계획신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계획변경신고서 탭을 클릭합니다.
- 계획신고서 접수번호 -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, 처리된 계획신고서의 내역이 조회됩니다.
- 원하시는 년도/월의 계획신고접수번호를 선택하면, 기 신고서를 기반으로 변경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.



4. 고용유지(유급휴직)조치 계획서 작성하기 - 1

- 계획신고서 탭을 선택하면 계획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.
- 로그인 ID가 사업장관리번호 부분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.
-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년월을 선택합니다.
- 별표로 표시되어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 값이니 꼭 입력해주시고, 비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으로 입력이 불가합니다.
-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보험료 연체여부를 확인합니다.

4. 고용유지(유급휴직)조치 계획서 작성하기 - 3

- 고용유지조치(휴직) 기간의 휴직수당지급기준을 입력합니다.
- 고용유지조치(휴직) 기간을 입력해 줍니다.
- 고용유지조치 사유를 선택한 후, 상세사유를 적습니다.

4. 고용유지(유급휴직)조치 계획서 작성하기 - 2

-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.
- 휴직예정일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휴직일수가 계산됩니다.
- 피보험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피보험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.
- 전산대체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. (*전산대체신고 방법 안내 슬라이드 참고)
- 기동등록자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했던 기동등록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.

4. 고용유지(유급휴직)조치 계획서 작성하기 - 4

-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업로드 합니다.
- 업로드 한도 용량이 작기 때문에 파일용량을 낮추어 업로드하시길 바랍니다.
- 작성된 신고서는 먼저 저장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저장 해주셔야 합니다.
- 이후 수정사항이 있다면 데이터 수정 후 수정버튼을 눌러주셔야 데이터가 정상 수정됩니다.
-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이 완료 되어야 신고서 접수가 완료됩니다.(신고서 접수 이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능합니다.)



4. 고용유지(유급휴직)조치 계획 변경 신고서 작성하기 - 5

- 고용센터를 통해 처리된 계획신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계획변경신고서 탭을 클릭합니다.
- 계획신고서 접수번호 -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, 처리된 계획신고서의 내역이 조회됩니다.
- 원하시는 년도/월의 계획신고접수번호를 선택하면, 기 신고서를 기반으로 변경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.

5. 고용유지(휴업) 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- 2

번호	계획신고접수번호	신청년도	사망일	사망월	계획사유종류
1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2020	03	20	계획
2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2021	10	10	비교

- 계획신고서 접수번호에서 <검색> 버튼을 클릭하면, 처리된 계획신고서의 내역이 조회됩니다.
- 원하시는 년도/월의 계획신고접수번호를 선택하면, 기 신고서를 기반으로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.

5. 고용유지(휴업) 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- 1

- 신청서 탭을 선택하면 신청서를 입력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.
 - 로그인 ID가 사업장관리번호 부분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.
- 계획신고서 접수번호를 검색합니다.
 - 별표로 표시되어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 값이니 꼭 입력해주시고, 비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으로 입력이 불가능합니다.
 -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보험료 연체여부를 확인합니다.

5. 고용유지(휴업) 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- 3

구분	휴업수당지급액	휴업기간	휴업일수	지급률상한액
1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
2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

- 위와 같이 기 계획신고서에 등록된 정보(대상자명단, 고용유지현황, 신청내용)를 신청서로 불러옵니다.
- 별표로 표시되어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 값이니 꼭 입력해주시고, 비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으로 입력이 불가능합니다.
- 이후 최하단의 저장버튼을 눌러서 신청서를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.
- * 기존의 대상자 명단에는 휴업수당지급액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. 계획서에서 불러온 대상자명단에서 휴업수당지급액을 꼭 추가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5. 고용유지(휴업) 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- 4

- 필요시 대상자 명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.
- 고용유지조치 예정 일자에 해당 일의 휴업예정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휴업일수/시간이 계산됩니다. (피보험자 등록)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피보험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. (전산대체신고)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. (*전산대체신고 방법 안내 슬라이드 참고) (기동록자등록)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했던 기동록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

5. 고용유지(휴업) 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- 6

- 지원금 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업로드 합니다.
- 업로드 한도 용량이 작기 때문에 파일용량을 낮추어 업로드 하시길 바랍니다.
- 작성된 신청서는 먼저 (저장) 버튼을 눌러 데이터가 저장 해주셔야 합니다.
- 이후 수정사항이 있다면 데이터 수정 후 (수정)버튼을 눌러주세요 데이터가 정상 수정됩니다. (전송)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이 완료 되어야 신청서 접수가 완료됩니다.(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능합니다.)

5. 고용유지(휴업) 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- 5

- 대상자명단을 추가한 후 신청서 하단에 ①(저장) 버튼을 클릭하면 ② 버튼들이 활성화됩니다. (전체보기) : 대상자명단 전체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. (대상자 수정) : 대상자 명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. (대상자 삭제) : 대상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. (대상자 전체 삭제) : 대상자 전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.

6. 고용유지(유급휴직) 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- 1

- 신청서 탭을 선택하면 신청서를 입력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.
- 계획신고서 접수번호를 검색합니다.
 - 로그인 ID가 사업장관리번호 부분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.
 - 별표로 표시되어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 값이니 꼭 입력해주시고, 비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으로 입력이 불가능합니다.
 -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보험료 연체여부를 확인합니다.



6. 고용유지(유급휴직) 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- 2

> 신청 정보 입력

신청년도: 년 월 회차

신고서 선택: 근로시간조정 고대제 개편 휴업 등

접수번호: 계획신고서 접수번호:

계좌번호:

*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.

> 고용보험 · 신고내역 조회

사업계획서 승인 정보 조회

순번	계획신고접수번호	신청년도	사망월	사망일자	계획서종류
1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2020	09	30	휴직
2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2020	10	31	휴직

- ① 계획신고서 접수번호에서 <검색> 버튼을 클릭하면, 처리된 계획신고서의 내역이 조회됩니다.
- ② 원하시는 년도/월의 계획신고접수번호를 선택하면, 기 신고서를 기반으로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.

6. 고용유지(유급휴직) 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- 4

고용유지조치(휴직) 대상자 명단

*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,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.

번	주민등록번호	성명	당월의 휴직기간	휴직일수	휴직수당 지급액
1				일	
2				일	
3				일	
4				일	
5				일	
6				일	
7				일	
8				일	
9				일	
10				일	

계: 일

- 필요시 대상자 명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.
- <피보험자 등록>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피보험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.
- <전산대체신고>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. (*전산대체신고 방법 안내 슬라이드 참고)
- <기동록자등록>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했던 기동록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.

6. 고용유지(유급휴직) 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- 3

고용유지조치(휴직) 대상자 명단

연번 주민등록번호 성명 당월의 휴직기간 휴직일수 휴직수당 지급액

1

2

3

4

5

6

7

8

9

10

계: 일

- 위와 같이 기 계획신고서에 등록된 정보(대상자명단, 고용유지현황, 신청내용)를 신청서로 불러옵니다.
- 별도로 표시되어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 값이니 꼭 입력해주시고, 비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으로 입력이 불가능합니다.
- 이후 최하단의 저장버튼을 눌러서 신청서를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.
- * 기존의 대상자 명단에는 휴직수당지급액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. 계획서에서 불러온 대상자명단에서 휴직수당지급액을 꼭 추가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.

6. 고용유지(유급휴직) 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- 5

1

저장

고용유지조치(휴직) 대상자 명단

성명 검색

연번 <input type="checkbox"/>	주민등록번호	성명	당월의 휴직기간	휴직일수	휴직수당 지급액
<input type="checkbox"/> 1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2020/02/26~2020/02/28	3일	700,000
<input type="checkbox"/> 2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2020/02/26~2020/02/28	3일	

계: 일

2

- 대상자명단을 추가한 후 신청서 하단에 ①(저장) 버튼을 클릭하면 ② 버튼들이 활성화됩니다.
- <전체보기> : 대상자명단 전체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.
- <대상자 수정> : 대상자 명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.
- <대상자 삭제> : 대상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.
- <대상자 전체 삭제> : 대상자 전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.



* 전산대체 신고 방법 안내(다수인원신고) - 4



전산대체신고 데이터 검증 화면

- ① 데이터 검증
 - 엑셀파일 업로드를 통해 등록된 대상자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대상자 등록정보가 맞는지 검증과정을 거칩니다.
 - 사유를 확인 후 정상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 정보는 수정 후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.
- ② 데이터 저장
 - 저장 버튼을 눌러 등록가능여부가 '예'인 대상자 정보를 신고서/신청서에 저장합니다.
- ③ 결과
 - 신고서/신청서에 등록된 대상자 명단을 확인합니다.

청	청(지청)	고용센터	주소	담당 지역	대표번호
서울청	서울청	서울 고용복지'센터	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, 4층 기업지원과 (창교동, 창교빌딩)	서울특별시 중구·종로구·동대문구	02-2004-7394~5, 7910~1
	서울청	서초고용센터	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, 5층	서울특별시 서초구	02-580-4972~5, 4956, 4922, 4978, 4977
	서울강남지청	서울강남 고용복지'센터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, 금강타워10층	서울특별시 강남구	02-3468-4703, 4708, 4709, 4711~4716, 4733, 4737, 4787
	서울동부지청	서울동부 고용복지'센터	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4층 기업지원팀	서울특별시 성동구·광진구·송파구·강동구	02-2142-8420, 8429, 8433~5, 8443, 8456, 8896, 8404
	서울서부지청	서울서부 고용복지'센터	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-8, 5층(도화동, 삼창프라자)	서울특별시 용산구·마포구·서대문구·은평구	02-2077-6001~6, 6025, 6030, 6034, 6065, 6095
	서울남부지청	서울남부 고용복지'센터	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, 3층 기업지원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·양천구·강서구	02-2639-2403~2404, 2411, 2413, 2415, 2330, 2333, 2162, 2435, 2499
	서울북부지청	서울북부 고용센터	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0, 8층	서울특별시 중랑구·노원구·강북구·도봉구·성북구	02-2171-1833, 1800~5
서울관악지청	서울관악 고용복지'센터	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, 대륭포스트타워 3차 2층	서울특별시 관악구·구로구·금천구·동작구	02-3282-9249, 9353, 9361, 9366, 9379, 9384~6, 9388~9, 9393~4, 9396~7	
충부청	충부청	인천 고용복지'센터	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기업지원과	인천광역시 중구·동구·남구·연수구·남동구 및 옹진군	032-460-4811
	인천북부지청	인천북부 고용복지'센터	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기업지원팀	인천광역시 부평구·계양구	032-540-5751 032-540-5742~5
	인천서부지청	인천서부 고용복지'센터	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(삼곡동 서구청 제2청사) 10층 기업지원팀	인천광역시 서구·강화군	032-540-2050 032-540-2051~3
	부천시청	부천 고용복지'센터	부천시 길주로 351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기업지원팀	경기도 부천시	032-320-8972
	부천시청	김포 고용복지'센터	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기업지원팀	경기도 김포시	031-999-0942
	고양지청	고양 고용복지'센터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-16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기업지원팀	경기도 고양시·파주시	031-920-3962



전국고용센터 문의처

청	청(지청)	고용센터	주소	담당 지역	대표번호
중부청	의정부지청	의정부 고용복지*센터	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,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층 기업지원팀(가농2동 754)	경기도 의정부시·포천시·구리시·남양주시·동두천시·양주시·연천군·강원도 철원군	031-828-0832~4 0893, 0813, 0838
	경기지청	수원 고용복지*센터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, 수원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	경기도 수원시·용인시·화성시	031-231-7851~8, 7845, 7897, 7965, 7996
	성남지청	성남 고용복지*센터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	경기도 성남시·광주시·양평군·이천시·여주시·하남시	031-739-3170, 3122, 4991, 4916
	안양지청	안양 고용복지*센터	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, 메세포스빌타워 4층 기업지원팀	경기도 안양시·과천시·광명시·의왕시·군포시	031-463-0761~4, 0767, 0768
	안산지청	안산 고용복지*센터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, 안산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	경기도 안산시·시흥시	031-412-6967
	평택지청	평택 고용복지*센터	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, 장당플라자 2층 평택고용복지*센터 기업지원팀	경기도 평택시·오산시·안성시	031-646-1238
	강원지청	춘천 고용복지*센터	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 (석사동), 빅서스프라자빌딩 3층 기업지원팀	강원도 춘천시·화천군·홍천군·양구군·인제군, 경기도 가평군	033-250-1947
	강릉지청	강릉 고용복지*센터	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(교동), 강릉고용센터 1층	강원도 강릉시·동해시	033-610-1913
	강릉지청	속초 고용복지*센터	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, 3층(조양동) 속초고용센터	강원도 속초시·고성·양양군	033-630-1909
	원주지청	원주 고용복지*센터	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,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	강원도 원주시·횡성군	033-769-0943, 0946, 0960
	태백지청	태백 고용복지*센터	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	강원도 태백시	033-550-8633
	태백지청	삼척 고용복지*센터	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, 현진빌딩 4층	강원도 삼척시	033-570-1906
	영월출장소	영월 고용복지*센터	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, 영월고용복지*센터(2층)	강원도 영월군·정선군·평창군	033-371-6254
부산청	부산청	부산 고용복지*센터	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(양정동) 부산고용복지*센터 3층 기업지원과	부산광역시 중구·동구·서구·영도구·남구·부산진구·연제구·사하구	051-860-1923~7, 1931, 2072, 2100
	부산동부지청	부산동부 고용복지*센터	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동부고용복지*센터 4층 기업지원팀	부산광역시 동래구·금정구·수영구·해운대구·기장군	051-760-7210~5

청	청(지청)	고용센터	주소	담당 지역	대표번호	
부산청	부산북부지청	부산북부 고용복지*센터	부산 북구 화명대로 9(화명동), 부산북부고용복지*센터 3층 기업지원팀	부산광역시 북구·사상구·강서구	051-330-9951~9955	
	창원지청	창원 고용복지*센터	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고용센터빌딩 6층 기업지원팀	경상남도 창원시·함안군·의령군·창녕군	055-239-0960	
	울산지청	울산 고용복지*센터	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고용복지*센터 5층 기업지원팀	울산광역시	052-228-1942	
	양산지청	김해 고용복지*센터	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김해고용복지*센터 4층	경상남도 김해시, 밀양시	055-330-6437	
	양산지청	양산 고용복지*센터	경남 양산시 중부로 10 양산고용복지*센터 3층	경상남도 양산시	055-379-2430	
	진주지청	진주 고용복지*센터	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73 2층	경상남도 진주시·사천시·산청군, 하동군·남해군, 거창군, 함양군, 합천군	055-760-6751	
	통영지청	통영 고용복지*센터	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통영고용복지*센터 3층	경상남도 통영시·거제시·고성군	055-650-1811, 1814, 1818	
	대구청	대구청	대구 고용복지*센터	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	대구광역시(중구·수성구·북구·동구)·경산시·영천시·군위군·청도군	053-667-6036
		대구서부지청	대구서부 고용복지*센터	대구 서구 서대구로 9(내당동)	대구광역시 남구, 서구·달서구	053-605-6460~7,6479
		대구서부지청	대구달성 고용복지*센터	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4길 1	대구광역시 달성군, 경상북도 고령군	053-605-9518~9
대구서부지청		칠곡 고용복지*센터	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층	경상북도 칠곡군 성주군	054-970-1906~7	
포항지청		포항 고용복지*센터	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	경상북도 포항시·영덕군·울릉군 및 울진군	054-280-3000	
포항지청		경주 고용복지*센터	경주시 원화로 396 7층	경상북도 경주시	054-778-2500	
구미지청		구미 고용복지*센터	구미시 백산로118 구미고용센터 기업지원팀	경상북도 구미시·김천시·칠곡군 (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)	054-440-3361	
영주지청		영주 고용복지*센터	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2층	경상북도 영주시·봉화군	054-639-1146	
영주지청		문경 고용복지*센터	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	경상북도 문경시·상주시	054-559-8251	
안동지청		안동 고용복지*센터	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	경상북도 안동시·예천군·의성군·청송군·영양군	054-851-8062	



전국고용센터 문의처

청	청(지청)	고용센터	주소	담당 지역	대표번호
광주청	광주청	광주 고용복지+센터	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	광주광역시 동구·서구·남구·북구, 전라남도 나주시·화순군·곡성군·구례군·담양군·장성군	062-609-8500
	광주청	광주광산 고용복지+센터	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(2층)	광주광역시 광산구, 전라남도 영광군·함평군	062-960-3201
	전주지청	전주 고용복지+센터	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, 전주고용복지+센터 3층 기업지원팀	전라북도 전주시·무주군·장수군·진안군·완주군·임실군	063-270-9210
	전주지청	남원 고용복지+센터	남원시 향단로 39, 남원고용복지+센터	전라북도 남원시·순창군	063-630-3917
	전주지청	정읍 고용복지+센터	정읍시 수성택지3길 28,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정읍고용복지+센터	전라북도 정읍시	063-530-7501
	익산지청	익산 고용복지+센터	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	전라북도 익산시	063-840-6507
	익산지청	김제 고용복지+센터	김제시 화동길 105	전라북도 김제시	063-540-8406
	군산지청	군산 고용복지+센터	군산시 조촌로 62, 군산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팀	전라북도 군산시	063-450-0636
	군산지청	부안 고용복지+센터	부안군 변영로 145, 2층 부안고용복지+센터	전라북도 부안군·고창군	063-580-0515
	여수지청	순천 고용복지+센터	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, 4층	전라남도 순천시·보성군·고흥군	061-720-9161
	여수지청	여수 고용복지+센터	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, 2층	전라남도 여수시	061-650-0140
	여수지청	광양 고용복지+센터	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, 8층	전라남도 광양시	061-798-1902
	목포지청	목포 고용복지+센터	전남 목포시 평화로 5번지 4층	전라남도 목포시·무안군·신안군·영암군·진도군	061-280-0541~2, 0564
	목포지청	해남 고용복지+센터	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, 2층	전라남도 강진군·해남군·완도군·장흥군	061-530-2912
대전청	대전청	대전 고용복지+센터	대전시 서구 문정로 56, 4층 기업지원과	대전광역시, 충청남도 금산군	042-480-6012~13, 6015~21
	대전청	공주 고용복지+센터	충남 공주시 변영1로 46, 스타타워빌딩 4층	충청남도 공주시	041-851-8507
	대전청	논산 고용복지+센터	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-8	충청남도 논산시·계룡시	041-731-8601
	대전청	세종 고용복지+센터	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번지 3층	세종특별자치시	044-861-8992~3
	청주지청	청주 고용복지+센터	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, 청주고용복지+센터 1층 기업지원팀	충청북도 청주시·진천군·괴산군·보은군·증평군·옥천군·영동군	043-230-6714~6716, 6719, 6721, 7006, 7008

청	청(지청)	고용센터	주소	담당 지역	대표번호
대전청	천안지청	천안 고용복지+센터	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, 충남타워 3층	충청남도 천안시·당진시·아산시·예산군	041-620-7441~6
	충주지청	충주 고용복지+센터	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3 (문화동, 충주고용센터) 2층 기업지원팀	충청북도 충주시·음성군	043-850-4030, 4032
	충주지청	제천 고용복지+센터	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 (화산동, 제천고용센터)	충청북도 제천시·단양군	043-640-9322
	보령지청	보령 고용복지+센터	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, 보령고용복지+센터 3층 기업지원팀	충청남도 보령시·서천군·부여군·홍성군·청양군	041-930-6259, 6243
	서산출장소	서산 고용복지+센터	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, 서산고용복지+센터 5층	충청남도 서산시·태안군	041-661-5614
	제주	제주고용센터	제주 고용복지+센터	제주시 중앙로 165, 고용복지+센터 2층	제주시·서귀포시

경영이 어려운 회사의 든든한 파트너

고용유지지원금

발행일	2020년 3월
발행처	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
주소	(우)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
연락처	044-202-7219
인쇄처	동명기획 ☎ 044)868-7542

1.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.
2.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발행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경영이 어려운 회사의 파트너

고용유지지원금



고용노동부